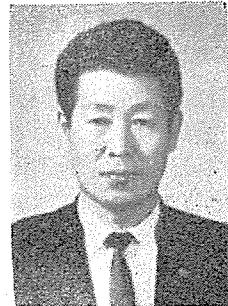


# 建築士 業務의 報酬基準

## 制 定 經 緯

姜 奉 辰



### 1. 序 言

特別法에 依한 大韓建築士協가 發足한 以後  
會長을 비롯 理事一同은 負荷毛 重責이 너무나  
過大하여 이 重責을勘當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데 對해서 慎重히 研究를 거듭한 結果 于先任  
務를 各理事가 部別로 分擔하여 各其所任事  
務에 所信껏 全力を 다했보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不肖本人은 會員에게 直接的인 關係가  
있을 뿐 아니라 此의 成敗與否는 곧 會員의 生  
活을 左右하리 만큼 重大한 性格을 지닌 設計業  
務의 報酬基準 制定이라는 重且大한 任務를 分  
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重大한 事業은  
決코 責任을 맡은 理事一人의 獨斷으로서는 到  
底히 이루어 질 수 없으며 且 實際 不可能한 것  
이다. 그러므로 理事會의 決議로서 于先 設計料  
率制定 委員을 選出하고 委員會를 構成하여 推  
進하도록 하였든 것이다.

### 2. 委員選定

1965年 11月 3日에 開催한 第3回 理事會에서  
設計料率制定 委員選定에 關하여 論議한 끝에  
그 基本原則을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가) 委員數는 委員長(擔當理事)을 包含해서 7  
人으로 할 것.

나) 人選은 會員中에서 하되 口頭呼薦해서 滿  
場一致로 定할 것.

以上과 같은 原則下에 選出한 結果 委員長(擔  
當理事)外에 委員으로서 張起仁, 金鍾植, 金壽  
根, 康晋參, 金鎮千, 李秉均氏 等 諸氏를 選出  
하고 11月 26日字로 委員 委嘱狀을 發送하였다.

### 3. 草案作成

委員會에 上程시킬 草案作成에 際하여 在來  
의 大韓建築士協會 業務規程, 韓國建築家協會 報  
酬規程, 日本建築士協會 報酬規程, 英國 R.I.A.

A.I.A. 및 美國의 規程等을 參考로 하여 各其 規  
程中 우리나라 實情과 現實에 맞도록 調節하고  
適宜 取捨選擇 或은 修正補充하였다.

草案의 骨子를 들어 보면

가) 業務規定에는 建築士 業務의 總括的인 事  
項을 規定하였다.

나) 報酬規定에는 建築士 業務報酬에 關한 總  
括的인 事項을 規定하였다.

다) 工事費 基準表에는 1966年 4月 1日 現在  
의 物價와 勞賃을 基準으로 한 最低工事費의 規  
準을 定하였다.

라) 設計報酬料率表는 上記의 業務規定과 報酬  
規定에 立脚하여 各種 建物에 對한 設計費料率을  
規定하였는 바 各種 建物을 設計의 難易와 規模  
等을 考慮하여 7種으로 區分하고 工事費 區分은  
300萬원부터 2億以上까지의 階段으로 定하였다.

마) 工事監理報酬料率表는 設計費의 60% 乃至  
90%에 該當하도록 工事費에 對한 %로 表示  
하였다.

바) 建築物 調查 鑑定業務 報酬料率表는 鑑定  
類別을 種目으로 하고 亦是 工事費에 對한 %로  
表示하였다.

사) 法令에 依한 節次履行代理에 關한 業務報  
酬表는 建築許可手續 또는 이에 先行 或은 附隨  
되는 各種 許可申請에 對한 報酬를 規定하였다.

아) 地域造成에 關한 業務報酬表는 作業期間  
을 基準삼았다.

자) 附帶業務報酬表는 基地調查와 建築士 日  
當 等을 規定하였다.

以上과 같이 9個項目으로 規定을 만들고 附  
錄으로 倫理規約抄를 添附하도록 草案을 作成한  
것이다.

### 4. 委員會開催

以上과 같은 草案을 作成하고 此를 委員會에  
上程討議하기 為하여 1965년 11월 2일에 第1回

料率制制定委員會를 開催하고 이어서 1966년 1 월 14일, 1월 28일, 2월 9일의 連4回에 亘한 委員會를 開催하였다.

委員會에서 銳意 討議한 結果를 着어보면  
가) 條文의 新設改廢가 있었고

나) 工事費 基準表의 構造別에 있어 P.C 造와 特殊構造를 插入토록 하고

다) 設計報酬料率表의 工事費 區分을 300萬원 에서 10億 以上까지의 13階段으로 追加하였고 建物種別의 再調整과 設計費 料率 %을 草案보다 約 10~20% 減하기로 하였다.

라) 工事監理報酬料率表에 있어서 監理料는 設計費의 40~70% 線으로 草案에 比해서 大幅引下하였다.

라) 其他의 報酬表에서는 部分的으로 報酬額을 減한 것 外에는 大體로 草案대로 通過를 보았다.

## 5. 認可申請

以上과 같이 委員會에서 修正 通過된 案을 1966년 3월 19일에 開催한 支部長 會議에 다시 上程하여 協議에 附한바若干의 字句 修正이 있었을 뿐 滿場一致로 協賛을 얻었으므로 드디어 1966년 4월 6일에 建設部에 認可申請을 내게 된 것이다. 申請書 提出後에 建設部의 要請으로 料率算出 根據 明細書를 追加 補完하였다. 修正된 内容을 들면 大略 다음과 같다.

먼저 修正된 内容을 着기 前에 앞서 말한 料率算出 根據 明細書 内容을 暫間 着어보면, 算出 根據明細는 第 1 種 乃至 第 7 種에 亘하여 各種마다 1例式을 들어 經費를 計上하였다. 即 第 1 種은 一般住宅을, 第 2 種은 學校를, 第 3 種은 體育館을, 第 4 種은 高級住宅을, 第 5 種은 綜合病院을, 第 6 種은 教會를, 第 7 種은 文化財 復原設計를 例로 들어 각各 設計費와 經費를 計算한 結果 經費를 排除한 所得率은 平均 24%로 나타났다(現行 課稅率 所得率은 53%) 修正된 内容을 項目에 따라 그 경위를 着어 보겠다.

가) 業務規程 第 6 條 4 號 契約上 委囑者에게 提出하는 圖書規定中 「許可申請書」를 追加插入하였는 바 理由는 實施設計를 委囑 받았으면 建築法에 依한 許可申請書는 當然히 作成해 줄義務가 있기 때문이었다.(다만 申請書作成에 限한 것이며, 手續에 必要한 諸費用은 設計費와 別途로 計算할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나) 報酬規程 第 10 條 「設計報酬는 基本設計를 거쳐서 實施設計를 한 것으로 看做하여 받는다의 全文을 削除하였는 바 理由는 簡單한 規模設計를 問題가 되지 않겠지만 大規模인 設計에 있어서는 基本設計를 하지 않고 實施設計만 하게 될 경우에는 不合理하기 때문이었다.

다) 報酬基準의 性格은 어디까지나 權利規程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義務規定도 隨伴해야 하지 않느냐는 點에서 다음의 2個條文을 追加插入하였다.

報酬規程 第 13 條 「建築士가 契約期間을 遲延 할時 遲延 1日에 對해 契約金額의 2/1000에 該當한 遲滯賠金을 委囑者에게 支給한다. 同 第 14 條 「建築士가 設計의 不實로 因하여 財產上의 損害를 ��쳤을 경우에는 民法上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賠償의 義務를 진다」

라) 設計報酬料率表(%)에 있어 第 1 種 乃至 第 7 種의 各種目에 亘하여 料率을 各各 0.5%씩 減한 結果 工事費區分 300萬원(下限)에 對한 料率을 보면 第 1 種 2.5%, 第 2 種 3.5%, 第 3 種 4%, 第 4 種 4.5%, 第 5 種, 5.5%, 第 6 種 6.5%, 第 7 種 7.5%로 各各 引下되었는 바 理由는 現實的인 面에서 建築士가 實施받을 수 있는 最低料率을 制定하자는 데 있었다.

## 8) 地域造成에 關한 業務報酬表

9) 附帶業務報酬表 等 2個報酬表는 全文削除하였는 바 理由는 協會에서 內規로 會員에게 通達할 性質의 것 이지 認可事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 6. 結語

以上과 같이 料率制定의 경위를 大略 着어본 것은 지금까지 會員 여러분으로부터 왜料率制定이 遲遲不進하느냐는 叱責을 數없이 들은 바도 있고 또 果然 어떻게 制定될까 궁금하게 여기는 會員도 있으리라 싶어서 그 동안의 于餘曲折 끝에 겨우 落着確定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會員 여러분의 諒解를 바라기 為한 것이다. 전사협 132호(66. 6. 10)로 신청하여 이번에 認可된 建築士業務의 報酬 基準에 對하여 特히 一言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制定된 料率은 어디까지나 最低限度料率이니 만큼 其 以上 받도록 會員 각者が 努力하실 것은 勿論 絶對로 其 以下로 받아 會員 스스로의 品位保全을 破壞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筆者: 協會 理事